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기본규정」 제6조에 따라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연구년의 종류 및 정의) 교원연구년(이하 ‘연구년’이라 한다)은 일반연구년, 청원연구년 및 특별연구년으로 구분하며, 청원연구년에 대한 사항은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1. “일반연구년”이라 함은 본교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 및 학생지도에 대한 의무 없이 학술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청원연구년”이라 함은 교원이 강의 및 학생지도에 대한 의무 없이 국제적인 탁월한 성과가 예상되는 연구활동 또는 진행 중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특별연구년”이라 함은 교무위원 보직을 연속 2년 이상 수행한 교원이 강의 및 학생지도에 대한 의무 없이 학술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기간을 말한다.
4. “연구년 교원”이라 함은 일반연구년, 특별연구년 또는 청원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을 말한다.

제3조(연구년의 기간 등) ① 연구년의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년의 개시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한다.

제4조(일반연구년의 신청 자격) ① 일반연구년 교원은 본교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업적평가 실적이 탁월하고 교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교원 중에서 선정하며, 근속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인 교원에게 6개월, 근속기간이 6년 이상인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직전 일반연구년의 종료일로부터 근속기간 3년이 경과된 교원은 6개월, 근속기간 6년이 경과된 교원에게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휴직 기간, 정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특별연구년 기간, 유급 청원연구년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제7의2호에 의한 휴직 및 교원인사기본규정 제17조에 의한 파견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5조(연구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구년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연구년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직위해제 중인 자
3. 연구년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가. 정직: 24월
 - 나. 감봉: 12월
 - 다. 견책: 6월
4. 연구년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휴직 또는 재임용 유보 중에 있는 자
5. 연구년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제12조 제2항 또는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자. 단, 소정의 의무실적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12조 제8항에 따라 연구년 신청 제한기간을 부여한다.
6. 일반연구년의 경우 연구년 신청기간 종료일 기준 일반연구년 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자
7. 연구년 신청일 기준 직전 2개년간의 교원업적평가 차등그룹 평가 결과 G급이 1개 이상인 자. 단, 휴직 또는 징계로 인해 자동으로 부여된 G급은 제외하고, 제외된 연도의 직전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8. 연구년 신청일 기준 직전 2개년간 다음의 평가계열별 연구실적이 없는 교원. 단, 연구실적은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구분	인정 실적 종류	인정 평가계열
----	----------	---------

국제논문	A&HCI, SSCI, SCIE, SCOPUS	전 계열
국내논문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제외)	인문·체육/사회/예술·창작
저서	국내·외 전문학술서적	전 계열
작품활동	작품활동실적	예술·창작

9. 연구년 기간 종료일부터 정년퇴직전까지 잔여 재직기간이 연구년 기간의 3배 기간 미만인 자
 10. 연구년 신청일 기준 직전 학년도 책임강의시간을 미충족한 자(당해 학년도 책임강의시간 충족여부가 확정된 경우 당해 학년도의 책임강의시간 충족여부 적용). 단, 급여감액 등 미충족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었거나 이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연구년의 개시를 제한할 수 있다.

1. 교원이 연구년을 허가받은 이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처분 종료 또는 직위해제가 종료될 때까지 연구년의 개시를 연기한다.

2. 인권센터, 감사팀 등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년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사안이 중대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

나. 조사 담당 부서장의 연구년 개시 유보의 의견이 있을 때

제6조(신청절차) 일반연구년 및 특별연구년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년 개시 6개월 또는 1년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연구년 신청서 [별지 제1호]

2. 특별연구년 신청서 [별지 제6호] (특별연구년에 한함)

3. 연구년 기간 중 연구 및 활동계획서 [별지 제2호]

4. 서약서 [별지 제3호]

5. 직무보완대책 및 소속 학과 교원현황 [별지 제4호]

6. 임상전임교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장의 동의서

7. 기타 대학(원) 교원인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7조(선정의 기준) 일반연구년 교원은 신청자 중 교원업적평가실적이 탁월하고 교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구년 부여 횟수

2. 본교 재직 연수

3.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업적평가 실적

4.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

5. 연구년 기간 중 국내외 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 여부

제8조(일반연구년 교원 수의 비율 제한) ① 일반연구년 교원의 수는 매 학기 일반연구년 교원, 휴직교원, 교환교원, 국내외 파견 교원을 포함하여 소속 학과(전공) 재직 전임교원 수의 1/4, 소속 대학(원) 또는 학부 재직 전임교원 수의 1/7, 임상전임교원을 제외한 서울·국제캠퍼스별 소속 전임교원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전임교원이라 함은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체를 의미한다.

② 인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속 학과(전공)의 재직 전임교원이 4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으로 파견된 교원, 특별연구년 교원, 청원연구년 교원은 재직 전임교원수와 연구년 등에 의한 부재교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선정절차) 소속 대학(원)장은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즉시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의 결정) ① 일반연구년 및 특별연구년 교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총장은 필요시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를 제7조 및 제8조의 제한에 관계없이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소속 대학(원)장은 제1항의 선정 결과를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년 교원의 처우) ① 연구년 교원에게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단, 무급 청원연구년 교원에게는

연구년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연구년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년 중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년 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며, 승진, 연봉책정 및 연구비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교내에서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임상계열 교원은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연구년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연구년 기간 중 담당할 수 있는 최대 강의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연구년 기간이 1년인 경우: 연구년 기간 2개 학기 합산 최대 15시간

- 연구년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구년 기간 1개 학기 매주 최대 6시간

2. 학기당 학부 강의를 1과목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연구년 기간 중 담당한 강의는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연구년 교원이 국내·외 대학에 출장하거나 외부 기관에 겸직할 경우, 「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 교내 각종 보직을 수행할 수 없으며, 기준에 수행 중인 보직은 연구년 개시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교원의 보직 수행이 필요한 경우 총장의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12조(일반연구년 및 특별연구년 교원의 의무) ① 일반연구년 및 특별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종료 후 해당학기 시작 1주일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5호]의 연구년교원복귀신고서를 제출하고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② 일반연구년 교원은 일반연구년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실적을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예능 및 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연구결과를 이에 상응하는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일반연구년을 1년간 수행한 교원의 연구실적 의무 :

- 인문·체육, 사회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0.9편 이상

- 무용, 예술·창작계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0.7편 이상 또는 50점 이상 작품활동으로 140점 이상

- 공학, 자연A계열: SCIE 게재 논문 0.7편 이상

- 자연B, 임상계열: SCIE 게재 논문 0.5편 이상

2. 일반연구년을 6개월간 수행한 교원의 연구실적 의무: 제1호 기준의 1/2을 적용하되, 일반연구년 수행 후 정년퇴직으로 인해 잔여 재직기간이 1년 6개월인 경우 정년퇴직일까지 제1호 기준의 3/8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연구년 교원은 연구년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연구년 기간의 3배 이상의 기간을 본교에서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연구년 기간 중에 교무위원 보직수행을 위해 잔여 연구년 기간을 보직 종료 이후로 연기한 경우 정년으로 일반연구년 기간의 3배 기간만큼 재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일반연구년 및 특별연구년 교원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해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국 후 7일 이내에 해외여행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반연구년 및 특별연구년 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년 종료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교원보수규정 제12조 제2호를 준용하여 보수를 감액지급한다..

⑥ 일반연구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의 의무실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교무처장은 종료 직후 업적평가에서 「교수연구실적평정규정」 [별표 1] 연구실적 평정기준에 의거하여 미이행 연구실적에 상응하는 점수를 감점한다.

⑦ 보수와 별도로 교비 연구비를 지급받은 일반연구년 및 특별연구년 교원이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년 기간 중에 지급받은 교비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학기부터 일반연구년 또는 청원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1. 연구년(일반연구년 및 청원연구년)의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이행일로부터 3년

2. 연구년(일반연구년 및 청원연구년)의 기간이 1년인 경우: 이행일로부터 6년

⑨ 제12조 제2항의 의무실적을 미제출하거나 제7항의 사항을 미이행한 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

으며, 퇴직 후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제13조(교무위원에 대한 특칙) ① 교무위원은 재임기간 중 연구년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연구년을 수행 중인 교원이 교무위원 보직에 임명된 경우 연구년은 중지되며, 잔여 연구년 기간을 보직 종료 이후로 순연할 수 있다. 다만, 잔여 연구년 기간 산정 시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가. 부여받은 연구년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1개 학기(6개월) 연구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나. 부여받은 연구년을 3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는 1개 학기(6개월) 연구년을 미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지된 연구년 당해 학기의 책임강의시간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연구년 교원으로 예정된 자가 교무위원으로 임명되어 연구년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구년은 교무위원 보직 종료 이후로 순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해 순연된 연구년은 교무위원 보직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년 개시학기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제6조의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학기 단위로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교무위원 보직 임명으로 인해 1개 학기(6개월)로 연구년을 종료한 경우 또는 잔여 연구년을 보직 종료 후로 순연한 경우 연구년 의무 연구실적 기준과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년을 1개 학기(6개월)로 종료한 경우 일반연구년은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연구실적, 청원연구년은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의 연구실적을 보직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1개 학기(6개월) 잔여 연구년을 순연하여 수행할 경우 보직 임명 전까지 수행한 연구년 기간과 합산하여 일반연구년의 경우 제12조 제2항 제1호의 연구실적을, 청원연구년의 경우 「청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의 연구실적을 연구년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연구년) ① 총장은 교무위원 보직을 연속 2년 이상 수행하고 이임한 자에게 1년 이내의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교무위원 보직 임명 이전에 수행한 일반연구년 또는 청원연구년의 의무 실적을 미제출하였을 경우 특별연구년을 부여할 수 없다.

② 특별연구년은 제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특별연구년은 특별연구년 개시학기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제6조의 신청 절차에 의거하여 학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연구년은 분할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연구년 종료 후 정년퇴직 시까지 잔여 재직기간이 특별연구년 기간의 3배 기간 미만이라도 특별연구년 교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년의 취소) 연구년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년을 취소할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년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는 당해 학기의 연구년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구년 학기 시작 후 3개월 미만에 취소하는 경우는 당해 학기의 연구년 시작일 부로 취소하고, 책임강의시간을 부여한다. 단, 연구년 취소학기에 강의를 수행하는 교원은 수행 강의시간을 책임강의시간으로 인정한다.

3. 연구년 취소 시 연구년 취소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속 대학(원)장은 제3호의 연구년 취소 결과를 교무처장 및 연구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강의의 대체) 연구년 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 학과(전공)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전임교원 또는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주관부서) ① 연구년 교원의 선정 등 연구년제에 관한 업무는 각 대학(원)장이 관리하고, 연구년 제도에 관한 관리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

② 연구처장은 연구년 교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결과를 매 학기 각 캠퍼스 학무부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 및 각 대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세칙폐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교수연구년 제도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3.(경과조치) 199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에 정년퇴직을 하는 교원은 제10조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교원이 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02년 상반기 연구년 선정 교원은 제10조 제2항의 의무사항을 선정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는 2007년도 3월 1일부터 연구년 기간이 시작되는 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4호, 제8조, 제12조제2항 및 제7항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연구년을 시작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도 연구년 대상자에 한해 제7조 제3호 교수업적평가실적은 2016학년도 실적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7호는 2017년, 2018년 종합교수업적점수를 근거로 설정되는 차등그룹 결과(2019학년도 2학기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 제2항의 연구실적 의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년 실적부터 적용하며, 2020년 1월 1일 전에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년 실적은 종전의 연구실적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연구년 교원의 처우)제4항 및 제5항은 2021학년도 연구년 선정 교원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연구년의 제한) 제1항 제7호 및 제8호는 2025학년도 연구년 선정부터 적용하고,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연구년 선정은 제5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하고 다음의 각 호를 적용한다.

1. 연구년 신청일 기준 직전 교수업적평가 차등그룹 선정 결과 G등급인 자. 단, 휴직 또는 징계로 인해 자동으로 부여된 G등급은 제외하고, 제외된 연도의 직전 선정 결과를 반영한다.

2. 연구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재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에 미달되는 자

② 제12조(연구년 교원의 의무) 제6항은 2022학년도 2학기 연구년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일반연구년의 신청 자격) 제2항 및 제3항, 제5조(교원연구년 신청의 제한)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2023학년도 1학기 일반 및 특별연구년 교원 선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5조(연구년의 제한) 제1항 제8호는 2025학년도 1학기 개시 연구년 교원 선정부터 적용하고, 제10호는 2024학년도 1학기 개시 연구년 교원 선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연구년 신청서

일반연구년 신청서

소속대학 및 전공(학과)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만 년 개월)		
체류 국가명			체류기관명/ 대학명			
연구년 및 해외파견 경력						
연구/파견 기관	기간		목적 및 사유 (연구년, 파견)	의무 연구실적 제출 여부 (일반연구년 또는 청원연구년의 경우)		
일반연구년 신청사유 및 목적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년() 6개월()		
연구년 기간 중 교내 강의 담당 여부	O, X					
연구년 기간 중의 연락처	주 소 : 연락처 :					
위와 같이 일반연구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년 기간 중 연구 및 활동계획서

연구년 기간 중 연구 및 활동계획서

1. 신 청 인	(소 속)			(성 명)		
2. 연구제목	(한 글)					
	(영 문)					
3. 연구 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관명)						
(소재지)						
4. 주 연구기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연구할 경우 모두 상세히 기술함)	초 청 자	(직 위)				
		(성 명)				
		(주 소)				
	연구기관의 지원사항 (구체적으로)					
5. 기 타 방문기관명	방문기관명		초청자 (직위), (성명)			소 재 지

6.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의 필요성 (1페이지 이상)
7. 연구기관에서의 연구활동계획 (구체적으로 2페이지 이상)
8. 연구희망기관의 연구자와의 추진경위 (관련된 서신의 사본 및 국문번역을 첨부)

※ 본 연구계획서의 연구제목, 주 연구기관, 방문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변경가능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소속 : 대학(원) 학과(전공)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본인은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만약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무처장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구년을 수행함에 있어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년 교원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일반연구년 의무실적 미제출시 제한사항】

- 연구년 신청안내일 기준

1. 연구년 신청 제한(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
 2.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 제한(전임교원 대외기관 겸직 및 출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
 3. 명예퇴직 제한(교원명예퇴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4. 명예교수 추대 제한(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5. 퇴직 후 비전임교원 및 강사 임용 제한 (교원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9항)

20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직무보완대책 및 소속 학과 교원 현황

직무보완대책 및 소속 학과 교원 현황

소 속: 대학(원) 학과

직 급:

성 명:

1. 담당직무 보완대책

학년도/ 학기	연구년 신청자			대 행 자		
	학 년	과 목 명	시 간	학과(전공)	성 명	비 고

2. 소속 대학(원) 학과(전공) 교원현황(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포함. 행정실장 작성)

직 급	현 원	유고자(성명/유고 사유)	비 고
교 수			
부 교 수			
조 교 수			

※ 유고자 난에는 연구년 수행 학기 기준 소속 학과(전공)의 연구년자, 휴직자, 파견자, 여행예정자를 포함 기록 함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구년 교원 복귀 신고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 . .
연구년 종류	일반연구년, 특별연구년, 청원연구년		
연구년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연구기관 및 대학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연구제목			
학술지 게재 예정일	년 월 예정		
발표 예정 학술지명			
위 본인은 상기 연구년을 마치고 <u>년 월 일</u> 부로 <u>대학(원)</u> 에 복귀하고자 합니다. 20 <u>년</u> <u>월</u> <u>일</u> 신 청 인 <u>(인)</u> 대학(원)장 <u>(인)</u>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특별연구년 신청서

특별연구년 신청서

소속대학 및 학과							
성명							
생년월일							
교무위원 수행	보직명						
	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특별연구년 신청사유 및 목적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년() 6개월()
특별연구년 기간 중 교내 강의 담당 여부	O, X						
특별연구년 기간 중의 연락처	주 소: 연락처 :						
위와 같이 특별연구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희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연구년 축소 신청서

연구년 축소 신청서

소속대학 및 학과								
성명								
생년월일								
연 구 년	종류	일반연구년, 특별연구년, 청원연구년						
	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축소할 기간 (학기 단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년 축소 사유								
<p>※ 유의사항</p> <p>1. 연구년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 당해 학기의 연구년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함</p> <p>2. 연구년 축소 학기의 연구년을 3개월 미만 실시한 경우 연구년 시작일(연구년 축소 학기)부로 축소하고, 책임강의시간을 부여함</p>								
<p>위와 같이 연구년을 축소하고자 합니다.</p>								
<p>20 년 월 일</p>								
신청인				(인)				
<p>경희대학교 총장 귀하</p>								